

인천지방법원 2021. 11. 30 선고 2021가단26113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수인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1. 30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20. 5. 6.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21. 2. 5. 체결된 매매 계약을 각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C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. 5. 6. 접수 제209852호로 마친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국 2021. 2. 5. 접수 제477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
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 남해인

별지